

「학과(부)평가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2. 7. 11. 개정 판 (시행 2022. 8. 1.) → 2026. 8. 31. 개정 판 (시행 2026. 9. 1.)

바뀜 2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114/compare?from=1353&to=1574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전 6:37:51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학과(부)평가 기획연구위원회) ① 학과(부)평가의 기획·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학과(부)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2-07-09> ② 학과(부)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부총장, 각 처장, 총장특보, 각 단과대학장, 재무처장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1-01-22>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, 서기는 기획평가팀장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21-01-22> ④ 학과(부)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학과(부)평가 관련 규정의 제·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. 학과(부)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. 학과(부)평가 기준,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. 학과(부)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. 학과(부)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. 학과(부)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. 학과(부)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8. 그 밖의 학과(부)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(부)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, 재적위원 1/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⑥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제5조(학과(부)평가 기획연구위원회) ① 학과(부)평가의 기획·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학과(부)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2-07-09> ② 학과(부)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부총장, 각 처장, 총장특보, 각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1-01-22>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, 서기는 IR센터장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21-01-22> ④ 학과(부)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학과(부)평가 관련 규정의 제·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. 학과(부)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. 학과(부)평가 기준,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. 학과(부)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. 학과(부)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. 학과(부)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. 학과(부)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8. 그 밖의 학과(부)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(부)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, 재적위원 1/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⑥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7조(학과(부)평가 실무위원회) ① 기획처 산하에 학과(부)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학과(부)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2-07-09> ② 학과(부)평가실무위원회는 기획평가팀장(위원장), 평가담당(간사), 별표서식의 자료제공 부서 팀장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6-02-29> ③ 위원장은 기획평가팀장, 간사는 기획처 평가담당자로 하며,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21-01-22> ④ 학과(부)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학과(부)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. 학과(부)평가 기준,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. 학과(부)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. 그 밖의 학과(부)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(부)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	제7조(학과(부)평가 실무위원회) ① 기획처 산하에 학과(부)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학과(부)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2-07-09> ② 학과(부)평가실무위원회는 IR센터장(위원장), 평가담당(간사), 별표서식의 자료제공 부서 팀장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6-02-29> ③ 위원장은 IR센터장, 간사는 IR센터 평가팀장으로 하며,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21-01-22> ④ 학과(부)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학과(부)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. 학과(부)평가 기준,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. 학과(부)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. 그 밖의 학과(부)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(부)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학과(부)평가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"단과대학장, 재무처장"을 "단과대학장"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,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"기획평가팀장"을 각각 "IR센터장"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"기획처 평가담당자로"를 "IR센터 평가팀장으로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